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20. 12. 8.(화) 10:00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환경미화원 지녀 학자금 대예금
운용계획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2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489,107	22,700	80,420	431,387	-57,720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5. 검토의견

○ 기금 개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995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내역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200만원

총 2,27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학자금 대여 8,000만원

총 8,042만원입니다.

- 본 기금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성과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등의 기금 운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기금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지방기금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제2조(기금구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